

시험·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구분	[] 신규지정 [] 재지정	
시험·검사 분야	[]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	[] 시험·검사업무의 대행
	세부분야	세부분야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 전단, 제41조제6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험·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.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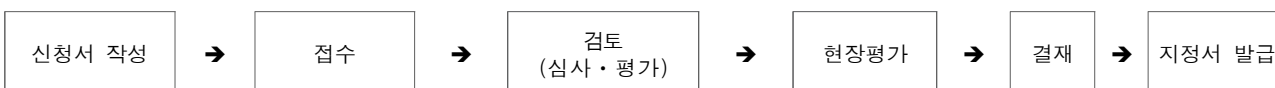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